

#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1998. 10

최수영 (북한경제사회연구팀장)

오승렬 (북한경제사회연구팀 연구위원)

박형중 (북한경제사회연구팀 부연구위원)

임강택 (북한경제사회연구팀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1
II. 경제부문 헌법개정 내용분석 .....	2
1.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	2
2. 경제관리·정책의 변화 모색 .....	4
3. 제한적 경제개방의 확대 추진 .....	5
4. 거주·여행의 자유 허용 .....	7
III. 경제부문별 변화 전망 .....	8
1. 생산부문 .....	8
2. 유통·소비부문 .....	9
3. 대외경제부문 .....	11
4. 종합평가 .....	12
IV. 고려사항 .....	14

## III. 문제의 제기

- 북한은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98.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음. 특히 경제관련 개정 조항들은 북한경제의 변화된 현실과 경제의 개혁·개방 지향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민에 대한 거주·여행의 자유 부여 등
- 경제관련 개정 조항들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준비인지 또는 정책방향 예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식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시도하고 향후 개방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시각과 이미 관행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하였을 뿐 본질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공존
  -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내용이 향후 북한경제에 상당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
- 이 보고서는 경제부문 헌법개정 내용분석을 기초로 북한 당국이 경제회생을 위해 단·중기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향과 부문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함.

## II. 경제부문 헌법개정 내용분석

### 1.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로 일부 개정함.

제20조(舊)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u>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제20조(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u>사회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	--

- 협동단체와 사회단체(조선노동당, 직맹, 여맹,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등이 포함)를 포괄하는 사회협동단체를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로 범제화함으로써 사회단체의 합법적인 생산수단 소유를 보장
- 특히 관행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대외무역 활동에 종사해 온 조선노동당 산하기관의 생산수단 소유 합법화를 통해 노동당 소속의 생산기업소 증가 예상

○ 개인소유의 주체가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됨.

제24조(舊) 개인소유는 <u>근로자들의</u>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u>근로자들의</u>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제24조(新) 개인소유는 <u>공민들의</u>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	---

-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약자,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등을 포

함한 모든 주민의 개인소유 가능

- 협동농장원들이 아닌 주민, 근로자, 사무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경작되었거나 묵인되어 온 터밭의 합법화

○개인소유의 대상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추가함.

제24조(舊)	제24조(新)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 구헌법에서 개인소유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터밭과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만 포함
- 그러나 신헌법에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소득)을 개인소유로 인정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로 인정한 것은 개인상업 등과 같은 교환, 서비스 및 유통부문에서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확대 허용 조치임.

- 단순 부업차원이 아닌 영리목적의 개인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사적 경제활동 증대와 이에 따른 유통장소인 농민시장 및 지역별 소규모 상설시장 활성화 전망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에서 부림짐승, 건물 등을 삭제함.

제22조(舊)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부림짐승·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기업 사업소 같은 것은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기업 사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	---

- 가축, 주택,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개인소유의 묵시적 허용
- 식량난,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법적인 가축 사육 및 주택 거래 등의 양성화 근거

## 2. 경제관리·정책의 변화 모색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을 조국의 '자주적 발전'에서 '융성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수정함.

제26조(舊)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제26조(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	---

- 정치 우선 및 폐쇄적 자립갱생에서 대외 교류·협력을 통한 실리지향적 경제건설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농업정책의 기존 목표인 농업의 '공업화'에 '현대화'를 추가함.

제28조(舊) 국가는 ... 농업을 <u>공업화</u> 하며	제28조(新) 국가는 ... 농업을 <u>공업화</u> <u>현대화</u> 하며
--------------------------------------	---

- 내부자원이 고갈된 현 상황에서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 기술 도입이 필수
-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기구(남한기업 및 민간단체 포  
함)의 지원획득 및 협력사업에 주력 시사.

○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  
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  
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경제관리의 자율성·채산성을 중시  
함.

제33조(舊) ...	제33조(新) ...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 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 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 도록 한다.(추가)
----------------	---

- 독립채산제를 헌법에 명시함에 따라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및 자율성 신장 의미
- 경제적 공간(원가, 가격, 수익성)의 올바른 활용은 채산성, 효  
율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부문 내에 자본주의적 경영  
기법의 도입 시사

### 3. 제한적 경제개방의 확대 추진

○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하도록 되어 있던 대외무역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하도록 변경함.

제36조(舊)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제36조(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	---

- 사회협동단체는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국가와 동등하게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에 종사
- 조선노동당 산하 무역회사들의 역할 증대 예상

○ 외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함.

제37조(舊)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	---

- ‘여러 가지 기업 창설’은 합영·합작 이외에도 100% 외자기업 유치, 주식회사 등의 허용 시사
- 기존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이외 여러 지역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
- 원산 및 남포는 보세가공지대, 금강산 일대는 관광특구, 이외 신의주 및 단천 등은 특수경제지대로 예상

#### 4. 거주·여행의 자유 허용

○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함.

제75조(新)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신설)

- 신설된 주민들의 거주·여행의 자유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명목상으로 신장
- 실제로 북한 당국은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을 묵인
- 거주·여행의 자유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커다란 변화 및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개인사업, 자영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주택, 건물 등에 대한 개인소유 여부가 당국의 심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주민들의 지역간 합법적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Ⅲ. 경제부문별 변화 전망

#### 1. 생산부문

○농업부문에서는 현대화의 기치아래 집단농장체제의 비효율성 제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예상됨.

-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의 실질적 도입과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철저 시행
- 협동농장을 지역 또는 부락단위로 세분화하여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농업에서의 지역책임 생산제 도입
- 그러나 가족단위(개인농) 중심의 농가책임생산제로의 이행은 시기상조로 예상

○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 제고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북한식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 부족한 자재와 재원을 중공업 및 선행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반면, 경공업부문에 대해서는 축소
- 경공업,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재의 공급선, 생산품목, 판매가격 등을 생산 단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권 부여

○소비재 생산활동의 일부 및 소속 근로자를 계획부문에서 분리·방출하고 합법적인 제2경제의 생산을 적극 장려함.

- 생산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채산성이 전혀 없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지방공장, 기업소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하여 독자적인 생산활동을 허용하는 등 일부 생산단위를 계획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분리할 가능성 존재
- 우선 <8월3일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생필품직장, 생필품작업반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일부를 생산협동조합으로 재조직하고 생산수단을 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공장, 기업소에서 분리하여 소비재 생산의 주체로 양성
- 가내생산과 서비스는 등록을 유도하여 양성화하고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소규모 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

## 2. 유통·소비부문

○개인의 경제활동(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과 일부 계획부문에서 분리 및 독자적 경영활동이 허용된 공장과 기업소가 생산한 소비재의 사적 유통망을 통한 거래가 확산됨.

- 사적 경제활동의 유통장소인 농민시장 활성화, 지역별 소규모 상설시장 등장 등과 같은 소비재 부문의 사적 유통망 확충
- 사적 유통망에서 각종 거래는 상품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논리가 적용

- 국가와 중앙당국의 배급·공급제도의 축소 및 계획경제부문 밖(제2경제)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일부 수매를 의무화함.
  -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배급·공급제도를 유지하여 식량, 기본생활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배급표를 제공하는 반면,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와 사적 경제활동에만 의존하는 주민에게는 국가 부담의 배급을 중단
  - 국영상점에서 공급하는 물자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제2경제부문의 생산자가 생산한 소비재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국가 기관이 수매
  - 이 경우 수매가격은 국정가격보다 높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중가격제 실시
  - 이중가격제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제2경제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시설물 사용료, 등록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 마련
  
- 농산물 및 생활품의 합법적인 사적 생산 확대와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소비재 생산 공장, 기업소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사적 상업망 이용은 급격히 증가함.
  - 이것은 소비재의 실물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유발

### 3. 대외경제부문

○ 대외무역의 활성화 및 물류 중개를 통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 사회단체에 대한 생산수단 소유 및 독자적 대외무역 허용으로 조선노동당 산하 무역기관의 대외무역 활동 증대
- 노동당 산하 무역기관들의 역할 증대에 따라 내각 산하 일부 생산기업을 노동당으로 흡수, 대외무역을 위한 자체 생산기반 확보
- 이들 생산기업소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에도 직접 참여
- 주변국(한국, 일본, 중국 등)을 활용하여 중고 공산품을 중개하거나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계지로 육성하여 외화벌이에 치중

○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특구 내 경제자유화 조치 대폭 확대를 통한 외화벌이 및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함.

- 금강산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나진·선봉을 포함한 두만강 유역 및 백두산 일대의 관광지 개발, 문화재 및 역사유적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외화획득
- 원산, 남포를 수출가공구와 유사성격의 보세가공지대로 지정, 신의주, 단천 등도 경제특구로 지정

- 나진·선봉지대는 경제자유화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중계수송 기지로 특화
- 산업(농업, 공업, 광업)시설 복구 및 가동률 제고, 경제난 완화를 위한 지원 획득 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함.
  -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기존 공업·광업시설 복구 및 가동률 제고
  -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및 경제지원 획득 지속
  - 외화벌이의 방편으로 남한기업 및 민간단체와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을 확대·강화

#### 4. 종합평가

- '94년 이후 신경제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적인 개방정책의 방향을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실히 밝힘.
  -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
-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향후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 제한적인 경제개방 확대, 체제 유지적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를 북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또는 자

본주의 경제질서의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

- 법적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나는 경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함으로써 주민통제를 통한 긴장체제 지속

○'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수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북한의 대내외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은 분명함.

- 대내적으로 소비재·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적 거래량이 증대하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이 발생
- 생산과 대외무역에서 조선노동당 등 사회단체의 역할이 증대
- 대외개방 지역이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대외협력사업이 추진되며, 합영·합작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유 및 경영 관계의 기업 조직이 발생

## IV. 고려사항

○개정 헌법이 암시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온건책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통제 및 강경책과 함께 진행될 것임.

- 체제 안전과 국면 장악을 위해 개혁·개방된 부문에 대해 통제와 간섭을 행할 것이며, 특히 정치적 치안사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개혁·개방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확대하더라도, 단계별 강약이 존재하여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
- 개혁·개방을 꾸준히 진행하더라도 급속한 경제회복이나 개방의 급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력갱생과 중공업우선주의를 계속 강조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이 경제정책 방향을 시사한 유일한 문건인 9월 17일 노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는 매우 보수적 견해를 밝히고 있음.

- 중공업 중심의 자력 갱생론 강조
- 경제발전에서 '정치사상적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의 중요성 강조
- 개혁·개방 바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제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킬 것 등을 강조

-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과 외자유치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경제위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임.
  -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로 파산한 홍콩 페레그린 그룹이 나진·선봉지대에서 철수
  - 이러한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재건 노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원·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및 협력사업, 기타 경협 사업을 통해 호혜적인 ‘주고 받기’ 식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대북 경협 종사 민간기업, 반관반민 단체 및 연구소, 대학인사, 개인자격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북경제협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협 사업의 자율적 관리, 정보제공, 상담 및 자문 등의 기능 부여

## 最近 發刊資料 案內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 외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용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대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b>■ Translation Series</b>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

##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統一情勢分析 98-06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經濟社會研究팀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6(代), FAX : 901-254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8년 10월 일

發行日 1998년 10월 일

---